

수원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5119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10.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 11. 1. 접수 제1569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은 2021. 6. 30. D의 원고에 대한 3억 2,600만 원(변제기 2021. 11. 4.)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21. 10. 18. 피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주식회사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그에 따라 2021.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1. 12. C에게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변제기 2021년 추석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미변제시 채권최고액을 위 채권액의 150%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D, C, F은 2021. 4. 13. 원고로부터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장과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그 공장부지 및 기계설비 대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D은 2021. 6. 30. 원고에게 주식회사 G이 보유한 하이샤시, 유리 등 자재의 대금을 3억 2,6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21. 11. 4.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은 F과 함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1. 1. 12.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대여금 2억 원의 150%는 3억 원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시기인 2021. 10. 18.도 변제기로 정한 추석 이후로 근접한 시기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원고의 채권은 그 이후인 2021. 6. 30.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별지